

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 2026년 폐시약 위탁처리용역

2. 용역개요

부산대학교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, 그 결과와 관련서류를 본교에 제출한다.

3. 산출금액 : 총 54,670천원

4. 계약기간 : 착수일 ~ 2027.02.28.

5. 용역범위

가. 처리대상 : 부산대학교 부산, 양산캠퍼스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

나. 용역내용 :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, 포장, 상차, 운송 등 적법한 처리

다. 입찰참가자격: 분담이행(폐기물수집·운반업,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업)

라.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(분담이행방식 허용) 가능

6. 폐기물 종류별 발생 예상량

(단위: 톤/년)

위치	폐기물 종류	성상	배출형태	계약기간 내 총 발생예상량	배출주기
부산 캠퍼스	폐시약 (액상, 고상)	시약 원액 등	20L HDPE, 용기 찌, 말통 등	3.2ton	3회
	폐유독물 (액상, 고상)	산, 염기, 폐유, 실리카, 페인트 등	20L HDPE, 용기 찌, 말통 등	5.0ton	2회
양산 캠퍼스	폐시약 (액상, 고상)	시약 원액 등	20L HDPE, 용기 찌, 말통 등	0.1ton	2회

* 작업 및 운반은 부산대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야 함

** 학교 특성 상 발생량과 배출주기는 변동성이 크므로 적극 협조해야 함

*** 폐시약 및 폐유독물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, 협의 시 폐유독물 항목 중 일부는 폐페인트, 폐산, 폐알칼리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가능

7. 준수사항

- 가. 계약자는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대상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착수일과 변경신고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담당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,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·운반, 처리하고, 계량 결과는 인계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장과 인계서를 작성·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다. 처리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,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라. 감독관이 계약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할 경우 7일 이내 **요구한 시간에** 맞춰 수집·운반, 처리하여야 한다.
 - 모든 작업은 최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.
- 마. 계약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,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- 바.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단가에 부가세와 상차비, 처리비, 운반비 등 처리제반비용을 포함하며 **6항의 배출주기와 발생예상량에서 변동사항이**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사.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르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.
- 아. 위 사항(가~사 항목)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문제로 수집·운반, 처리하는데 지장(사고발생, 환경오염, 수거지연 등)을 초래한 경우 또는 환경오염문제 등을 야기했을 경우 감독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8. 대가의 지급

- 가. 부산대학교는 계약된 지정폐기물의 단가에 따른 금액 외 수집·운반·계량 등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.
- 나. 수집·운반, 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 대금지급은 계약자의 요청(용역점사원)에 따른 폐기물처리내역서와 계량증명서, 폐기물전자관리시스템 인계서를 검토하여 용역점사조서에 의거 지급한다.
- 다. 폐기물처리량은 폐기물 운반자용 인계서와 계량전표를 통해 증빙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계량을 실시한다.
- 라. 계약자는 계약금액을 초과한 폐기물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계약변경 및 정산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정산 처리한다.